

영등포구의회  
제 18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2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

### 1. 경 과

의안 제269호로 2014년 1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 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 
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지원 신청 및 지원사업 규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업무위탁, 조직 및 운영,  
센터의 사업내용 규정(안 제7조 ~ 안 제9조)

마.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, 회의 소집 등 규정  
(안 제10조 ~ 안 제12조)

바.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, 지도·감독, 제재 조치, 보조금의  
반환 규정(안 제13조 ~ 안 제16조)

사.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제공인력, 구비 추가지원 규정  
(안 제17조 ~ 안 제19조)

아.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립 생활 교육  
실시(안 제20조)

자. 자립생활 체험홈 및 주거생활 지원(안 제21조, 안 제22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타구제정 : 서울시, 종로구 외 13개 자치구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.
  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
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 지원사업과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활동지원 급여, 주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  
- 그 동안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거나 과잉보호, 시설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등 보호위주의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3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보호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-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 사료되며,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등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 단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「장애인복지법」

**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한다)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 ■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·장애인,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,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.